

#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· 공포

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(위원장 이효련)는 현행 도시가스법령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정으로 가스시공업계는 물론 가스를 사용코자 하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복잡으로 공사공정 지연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어 이를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, 지난 9월 26일 개

정 · 공포 되었다.

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 (<http://kmcca.or.kr>)의 자료실 → 208번글을 참조바란다. ●

##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

□ 도법 시행규칙(시행일 : 2009.9.26. 지식경제부령 제95호)

○ 공사계획(공동주택 등) 신고 대상 완화

- 사용자공급관(공동주택 등) 및 사용자 부지 안의 정압기 부속설비의 변경공사는 해당 시 · 군 · 구청에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, 기술검토 및 시공감리는 현행대로 받음(제12조제5항, 제21조제1항6호 별표3제3호)

○ 비파괴검사 필름 보존방법 완화

- 비파괴필름을 원본 외에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자료로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음(제20조제2항)

○ 시공감리 제외대상 확대

- 관경 50mm초과 저압공급관 시공감리 대상 10m에서 → 20m미만으로 확대(제21조제1항제4호가목)

○ 시공감리 방법 조정

- 사용자공급관(공동주택 등)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공정시공감리에서 → 일부공정시공감리로 완화하였음(제23조제4항제2호다목 ※ 시행일 2010.1.1부터)

○ 연료전환시설 안전기준 규정

- 사업자 : 시설 설치 전 LPG 공급계약해지 확인 후 LPG시설 철거
- 시공자 : 용기밸브 막음 등 안전조치 후 안전시공
- 사용자 : LPG시설 안전철거 확인 후 가스사용(제48조)

○ 배관매설상황 확인절차 완화

- 긴급굴착공사 등은 굴착공사협의서 작성 면제(제56조)

○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완화

- 제조소 안 배관의 승인기준을 제조소 밖과 동일하게 20m 이상으로 완화함(별표2제1호가목)

○ PE배관 설치기준 완화

- 가스차단장치 설치대상 : 호칭지름 65mm → 공칭외경 75mm[별표5제3호가목3)다]
- 매설깊이 0.8m 대상 : 호칭지름 300mm → 공칭외경 315mm[별표6제3호가목2)사]

○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고압배관 설치기준 완화

- 중압배관과 고압배관 이격거리 : 2m →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 0.3m로 완화 [별표6제3호가목2)나]

○ 배관설치 기준 완화

- 건축물 내 사용자공급관 중 가정세대 분기관 용접접합 외 나사접합 허용 [별표6제3호가목2)다]
- 배관 이음매와 굴뚝(배기통)과의 이격거리를 30cm에서 15cm로 완화 [별표6제3호가목2)바) 및 별표7제1호가목3)마]

○ 가스계량기 설치제한 장소 명확화

- 공동주택의 대피공간, 방·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 등 계량기 설치금지 [별표7제1호가목1)가]

○ 사용시설배관의 막음조치 명문화

- 사용시설 배관의 말단부에 막음조치 의무화 규정 [별표7제1호가목3)다]

○ 안전관리자 전문교육 정례화

- 전문교육주기 :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지경부장관이 정하는 때 →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 매 3년마다 1회 (시행일 2010.1.1)